



현안분석
2017-12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강 문 수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7-12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강 문 수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the Tourism Industry

연구자 : 강문수(선임연구위원)
Kang, Mun-Soo

2017. 11. 15.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관광산업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새로이 재인식,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진흥방안이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
- ▶ 특히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
-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되어져 종국적으로 국내외적인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결과 생산
- ▶ 관광산업의 품질향상은 곧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의미. 이러한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종래 운영되어져 오던 관광분야에 있어 다양한 인증제도는,
-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으나,
- ▶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성,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관광산업 관계자 등은 관광분야에 있어 통합 품질인증제의 제도화 필요성 인식 강화
- ▶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시행
-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성과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추진 방향과 내용에 근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에 목적

II. 주요 내용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
- ▶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 주요 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 향후 확대-전개 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관광 통합품질인증제 관련 정책 수립 시 입법 정책적 준거 틀로써 활용기대
 - ▶ 향후 다른 행정분야 품질인증관련 법체계 구성모델로써 기능
-
- ▶ 주제어 : 인증, 관광산업,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There has been changes in understanding of the tourism industry. As the industry is recognized as a resource to boost socio - economic value added, promotion and vitalizations of the tourism industry becomes a one of national policies.
-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et a plan of promoting ‘sustainabl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and fostering it as the infra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To implement its plan, the ministry has made effort to modify laws and legislations related to the industry, focusing on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 ▶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tourism industry would create a virtuous cycle structure. Once the tourist satisfaction of the tourists is raised, the national image of Korea would be enhanced and other economic sectors would also grow further.

KLRI

- ▶ Considering effects of the tourism industry on the overall national econom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the industry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the industry and manage it in a systematic manner.
- ▶ In the past, numerous certification systems were implemented across the nation because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related associations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ir own the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there were a broad opinion on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plan-management-supervision system as ways to deal with problems in the industry, such as absence of a standardized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lack of expertise in certification of the tourism sector, insufficient follow-up management, and dispersion of public promotion.
- ▶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competent authority, first carried out the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n the second half of 2017, subjects were Goodstay, Hanok stay, and Korea stay which were included in the past quality assessment system.
- ▶ As means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the integrated certification system, the ministry has made effort to legalize 'Korea Tourism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so as to govern businesses closely related to tourism, for example,

business such as hotels, campground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 under Article 3(1)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but except the casino, and lodging business under the Public Heal Control Act.

-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ourism service by enhancing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tourism industry and to present suggestions to making framework of the legal system for introduction and stable oper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I. Major Content

- ▶ Necessity of Research and Scope
- ▶ The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of the Tourism Sector
- ▶ Issues of the current tourism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 ▶ Needs to introduce an integrate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n the tourism industry and pilot program
- ▶ Suggestions to legisla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 Summary and Assessment

목차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6
 1.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9

제1절 인증제도 21
 1. 개념 및 목적 21
 2. 분류 22
 3. 일반현황 23
제2절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24

제3장 주요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31

제4장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39

제1절 제도화 필요성 4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체계 44

제5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향성 5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52

제3절 지원 58

제4절 동등성 인정 인증 59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60

제6절 시범사업 63

제7절 수수료 65

제8절 권한의 위임- 위탁 66

제9절 과태료 67

참 고 문 헌 71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관광산업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새로이 재인식,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진흥방안이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가경제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그 구현방안으로써 관광산업의 양적성장과 관광산업의 품질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법제도적 정비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여 온 바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¹⁾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되어져 종국적으로 국내외적인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의 품질향상은 곧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종래 운영되어져 오던 관광분야에 있어 다양한 인증제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으나,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성,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 여러 문제점”²⁾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1)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면.
2)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7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관광산업 관계자 등은 종래와 같은 인증제도가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관광분야에 있어 통합 품질인증제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제도의 신속하고 실효적이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화방안 역시 병행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적 고려사항으로서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라는 인식 아래,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성격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추진 방향과 내용에 근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법체계 구성에 있어 논의되는 주요내용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입법정책적 노력은 향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련 정책 수립 시 그 준거 틀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기존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졌다. 때문에 실무적 측면에 있어서의 2017년 8월 이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써 도입·시행되고 있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법제도화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선행고 아울러 병행되어 논의되고 있는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있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방안제시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개 방향성을 설정하고 본 연구는 제2장에서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제3장

에서는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를 제도적으로 정착화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홍콩 등 7개국의 경우를 개관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제도화의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에 대한 법제화 방안으로써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지원, 동등성 인정인증,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시범사업,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규정 설정에 관한 법제적 제언을 하였다. 연구방법론 적용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현장 지향적 연구, 관련 국가의 경우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 및 법제설정에 있어 법해석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제2장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인증제도

제2절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제2장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인증제도

1. 개념 및 목적

인증(Certification)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³⁾ 제도적으로는 평가대상이 그에 적용되는 평가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입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ISO/IEC 17000, KS A ISO/IEC Guide 2)⁴⁾ 따라서 인증은 국내 제작 및 수입기기(서비스)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소비자의 안전, 보건 및 건강은 물론 환경, 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⁵⁾

3)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

<https://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topMenuId=536&upperMenuId=539>
(최종확인일 : 2017.11.22.)

4)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

<https://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topMenuId=536&upperMenuId=539>
(최종확인일 : 2017.11.22.)

5)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4면.

2. 분류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 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⁶⁾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목적과 유형 및 대상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인증 등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⁷⁾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⁸⁾

(1)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인증의 분류⁹⁾】

제 도	내 용	
법적 인증	법정 의무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을 의무화하는 인증제도로서, 미취득시 생 산 유통과 더불어 시장 진입 자체를 정부에서 규제함
	임의 인증	특정 정책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인증으로, 취득 시 우선구매,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함
민간인증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	

출처 : 박소현, 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e나라 표준
인증 홈페이지(<https://standard.go.kr/>) / KI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 한국공학교
육인증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재구성

6)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

<https://www.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topMenuId=536&upperMenuId=539>
(최종확인일 : 2017.11.22.)

7)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1면.

8)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

<https://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topMenuId=536&upperMenuId=539>
(최종확인일 : 2017.11.22.)

9)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0면.

(2) 목적에 따른 분류

“인증을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인증제도를 분류해 보면, 구조·치수·단위의 표준화 등 물리적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시험·측정·성능이나 시험·측정방법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품질 또는 안전 인증과 같이 품질, 안전 등 필요한 레벨을 정하여 일정 범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디자인과 신기술 인증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¹⁰⁾

(3) 대상에 따른 분류

“인증제도의 대상은 과거에는 주로 제품이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사업주체, 체계(System), 제조방법 또는 기술, 사용재료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제품인증에 관한 것으로는 “전, 품, GD” 마크 등이 있고, 사업주체에 대한 인증으로는 공장등급 인증이 있다. System 인증으로는 ISO 9000과 ISO 1400 시리즈 인증이 대표적인 것이고 제조방법이나 신기술에 대한 인증은 NT마크, 콩나물 품질인증 등이 있으며, 복합적인 것(제품+제조자)으로는 KS, S마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¹¹⁾

3. 일반현황

2017년 4월 기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 표준인증’에서는 인증분야에 따라 안전, 품질, 신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¹²⁾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 대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¹³⁾ 2017년 1월 31일 기준, 각 정부 부처에서는 진행 중에 있는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10)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5면.

11)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5면.

12)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1면.

13)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2면.

인증 등 6개의를 포함하여 총 170개가 진행 중에 있으며¹⁴⁾, 특히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 또는 기술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증된 기관 또는 물건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인증제는 170건 중 12건에 해당하고 있다.¹⁵⁾

제2절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1) 품질 및 관광서비스 품질인증

품질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품질정의로 한국산업규격(KS)과 일본 공업규격(JIS)은 품질은 물품 또는 서비스가 사용목적에 만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유의 성질, 성능의 전체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최근 새로 개정된 ISO 9000:2000에서 품질은 고유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품질이란 제품을 비롯한 서비스, 시스템, 프로세스가 지니고 있는 일련의 고유특성들이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의 (묵시적 내지 명시적)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라 정의한 것이다.”¹⁶⁾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개념의 관광분야 인증제로의 적용은 곧 관광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의미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관광객 만족의 개념과 원칙에 부합되는 관광서비스임을 인증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관광객은 질 높은 관광상품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고, 관광사업자는 자신들의 관광상품이 인증제도에 부합됨을 널리 알리게 됨으로써 이미지와 상품의 선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관광서비스 품질인증의 구성적 개념을 분설하여 본다면, 현대의 관광서비스품질에 대한 이해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총체적인 품질의 개념을 의미한다. 즉 유형적(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무

14)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2면.

15)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143면.

16) 김소영,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10면~11면.

17) 김봉,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과제 탐색, 국제자유도시연구 제2권제1호, 2011., 3면.

형적(추상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¹⁸⁾ 또한 서비스품질 인증제도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서비스품질 인증을 신청한 기업(기관)에 대하여 서비스품질 인증을 위한 심사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평가를 실시한 후, 대상기업(기관)의 전반적인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기관)에게 등급을 부여, 인증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⁹⁾

(2) 관광분야 인증제도 현황

2017. 2. 15 기준, 시행중인 인증제는 총 84개이며 식당(음식, 거리) 56개, 숙박(한옥, 민박) 14개, 쇼핑 4개, 관광상품 4개, 기타(여행사, 마을, 병원 등) 6개로 파악되었다. 중앙기관에서 시행중인 제도는 26개이며, 나머지는 지자체(시·도, 구·군)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숙박관련 인증제의 담당부서는 한국관광공사(코리아스테이, 한옥스테이 등)에서 진행 중인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식당(음식)관련 인증제의 담당부서는 주로 위생과와 식품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만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 중국단체관광객 전담식당, 관광추천음식점, 광주맛집 등).²⁰⁾

18) 김봉,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과제 탐색, 국제자유도시연구 제2권제1호, 2011., 5면~6면.
 19) 김봉,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과제 탐색, 국제자유도시연구 제2권제1호, 2011., 7면~8면.
 20)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통합 로드맵 수립」에 수록된 자료임. ; (재인용)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35면.

【관광분야 인증제 현황²¹⁾】

구 분	제도명	운영기관		대 상
1	올림픽농가맛집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일반음식점
2	경기관광인증우수프로그램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관광상품
3	국립공원야영장 등급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야영장
4	우수농가민박 ★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농어촌민박
5	농어촌관광등급제(으뜸촌)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마을
6	농가맛집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일반음식점
7	한국우수문화상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 산식, 한복, 공예, 콘텐츠
8	한국관광명품			쇼핑
9	우수여행사			여행사
10	부산우수관광인증제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관광상품
11	the best 우수숙박업소 ★	보건복지부	시·군·구청장	일반숙박업
12	서울시 우수 관광상품 인증제	서울관광마케팅(주)	서울관광마케팅(주)	관광상품
13	모범음식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군,구청장	일반음식점
14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병원
15	호텔업등급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숙박업
16	베니키아			일반숙박업
17	굿스테이			일반숙박업

21)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통합 로드맵 수립」에 수록된 자료임. ; (재인용)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36-38면.

구분	제도명	운영기관		대상
18	코리아 스테이			도시민박업
19	한옥스테이			한옥체험업
20	공중음식 체험식당			일반음식점
21	무슬림식당 친화 등급제			일반음식점
22	퍼스트 프리미엄 쇼핑			쇼핑
23	생태관광인증			자연체험여행 상품,숙박
24	음식테마거리			식당(거리)
25	우수여행상품	한국여행협회	한국여행협회	관광상품
26	할랄 식당 인증제	한국이슬람중앙회	한국이슬람중앙회	일반음식점
27	광주맛집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일반음식점
28	크린숙박업 (크린호텔,크린숙박업소)★			숙박업소
29	그린스텔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일반숙박업
30	깨친맛음식점			일반음식점
31	중국단체관광객 전담식당★			일반음식점
32	별미·대를이은음식점		남구청	일반음식점
33	깨친맛음식점		달서구청	일반음식점
34	사찰음식전문점★		달성군청	일반음식점
35	친절·청결한참맛집			일반음식점
36	동구맛집		동구청	일반음식점
37	관광형음식점★			일반음식점

구분	제도명	운영기관		대상
38	동구5미		수성구청	일반음식점
39	한우전문음식점			일반음식점
40	수성명품음식점			일반음식점
41	웰빙음식“밥”특화업소		서구청	일반음식점
42	「맛樂」업소		중구청	일반음식점
43	부산향토 전통음식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일반음식점
44	부산의 맛집			일반음식점
45	청정숙박업소 ★			일반숙박업
46	중저가모범숙박업소 ★			일반숙박업
47	포앤비텔		해운대	일반숙박업
48	광진구 맛집맛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일반음식점
49	도봉맛집		도봉구청	일반음식점
50	마포관광식당		마포구청	일반음식점
51	성동구 맛집맛집		성동구청	일반음식점
52	명품 울주 맛집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일반음식점
53	인천 명품음식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일반음식점
54	I-STAY ★			일반숙박업
55	맛으로 소문난 집		남동구청	일반음식점
56	맛있는 집		부평구청	일반음식점
57	연수동맛고을길 (음식문화시범거리)		연수구청	식당(거리)
58	청정옹진7미음식점		옹진군청	일반음식점
59	중구 경연대회 우수업소		중구청	일반음식점

구 분	제도명	운영기관		대 상
60	강원도지정 으뜸음식점	강원도	강원도	일반음식점
61	경기 으뜸맛집	경기도	경기도	일반음식점
62	김포맛집 ★		김포시청	일반음식점
63	부천의 특색음식점		부천시청	일반음식점
64	양평군 건강맛집		양평군	일반음식점
65	거제8미 전문음식점		거제시청	일반음식점
66	김해관광추천음식점	경상남도	김해시청	일반음식점
67	스마일 음식점 ★		남해군청	일반음식점
68	통영시 우수민박업소 ★		통영시청	민박업
69	창원시 명품음식점->창원맛집		창원시청	일반음식점
70	으뜸음식점	경상북도	경상북도	일반음식점
71	대나무죽순빌리지/국수거리/창 평국밥거리★	전라남도	담양군청	식당(거리)
72	목포음식명인·명가		목포시청	일반음식점
73	남도음식 명가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74	군산맛집	전라북도	군산시청	일반음식점
75	지평선깨·친·맛·값음식점		김제시청	일반음식점
76	관광기념품 100선 ★		전라북도	기념품
77	안심음식점		전주시청	일반음식점
78	제주우수관광사업체	제주도	제주도	숙박, 식당, 교통, 관광지, 여행업
79	외국인 편의음식점	충청남도	충청남도	일반음식점
80	으뜸공주맛집		공주시청	일반음식점

구분	제도명	운영기관		대상
81	서천군 향토맛집		서천군청	일반음식점
82	생거진천 쌀밥 집	충청북도	진천군청	일반음식점
83	대물림업소 ★		충청북도	일반음식점
84	밥맛 좋은 집			

★ 표기는 새로 추가된 것으로 조사된 인증제입(2017.2월 기준)

(3) 현행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

종래 인증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되어져 온 바 있는, “인증의 종류 과다 현상, 복수 인증에 따른 인증절차 중복, 인증제도의 종합 관리체계 미흡,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 부족”²²⁾은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위의 표 (관광분야 인증제 현황)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업종별, 업종 유형별, 인증 주체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인증주체가 병존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과 제도 운영의 관리·감독체계의 상이성이 나타남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특성에 따른 문제점은 곧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관광사업자는 물론 특히 관광객의 입장에 있어 관광 상품 내지 관광시설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관광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상존함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무엇보다 통합적 관광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22)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59면 이하 참조.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 주요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제3장

주요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1) 개관




이하에서는 관광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고 중국과 캄보디아의 경우를 개관하여 보고자 한다. 이 들 국가의 경우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소위 품질인증 대상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의 통합적 품질관리 체계를 상이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 국가들이라 하겠다.

【주요 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²³⁾】

구분	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제도 명칭	QTS (Quality Tourism Services)	Qualmark	Q (Calidad Turística)	QT (Qualité Tourisme)
인증 마크				
인증 기관	홍콩관광공사 (HKTB)	뉴질랜드관광공사 사 Qualmark. Ltd.	스페인 관광품질원 (ICTE)	프랑스산업경제부 기업총국 (DGE)

23)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40면~41면.

구분	홍콩	뉴질랜드	스페인	프랑스
도입 시기	2000년	1993년	2000년	2005년
도입 사유 (배경)	관광신뢰도 회복 (소매점과 음식점만 대상으로 시작)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자동차협회의 숙박, 캠핑장 등급제로 시작)	대외신뢰도 강화 ('96년 스페인 관광품질시스템 개발로 시작)	신뢰회복을 통한 관광수입증대 (환대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
시행 근거	홍콩관광공사 QTS Schemes	Qualmark Licence manual	스페인관광품질원 UNE 302001 ISO TC 228	관광품질인증제도 운영위원회 Reglement d'usage QT
법적 제재	-	-	-	마크 사용권 (국가 소유권 보유)
인증 대상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총 3개 분야 * 소매점은 22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행사장, 교통, 여행사, 서비스, 액티비티, 관광안내소 등 총 7개 분야 * 숙박업소는 10개로 세분류	숙박업소, 음식점, 여행사, 해변, 관광안내소 등 총 22개 분야	숙박업소, 관광지, 음식점, 야외활동, 컨벤션센터, 렌탈, 관광안내소 총 7개 분야 * 숙박업소는 6개로 세분류
인증 현황	총 1,245개소	총 1,986개소	총 1,945개소	총 5,748개소
인증 혜택	인증마크 사용,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지원	인증마크 사용, 홍보 및 품질관리 가이드 제시	인증마크 사용, 인증데칼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인증마크 사용, 인증마크 데칼 제공, 마케팅 및 홍보지원
인증 유효	1년	1년	3년	3년
홍보 사이트	홍콩관광청 사이트 (discoverhongkong.com)내 제도소개	전용 사이트운영 qulamark.co.nz	전용사이트운영 calidadturistica.es	산업경제부기업 총국사이트(entreprises.gouv.fr)내 제도소개

구분	중국	캄보디아	영국
제도 명칭	중국 관광지 품질인증제도 「Standard of rating for quality of tourist attractions」	Tourist Site	QiT (Quality in Tourism)
인증 마크			
인증 기관	국가여유국 (國家旅遊局)	Ministry of Tourism	잉글랜드관광공사 (VisitEngland)
도입 시기	1999년 (2004년 5A 시스템으로 정비)	2010년	2005년
도입사유 (배경)	- 관광지 서비스 및 관리 수준 향상 - 중국 관광 업계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지 품질 향상 - ‘Cambodia, Kingdom of Wonder’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	신뢰성 있는 관광정보제공 ('86년 숙박업 자발적 등록 활성화를 위해 관광청이 도입한 NQAS로 시작)
시행 근거	국가 관련 법률규정 및 국가 표준 『관광지 품질등급의 구분과 평가』	Prakas on Minimum Standard of Tourist Site	QiT Guideline
인증 대상	중국 내 정식개장 1년 이상의 관광지	문화·역사·농업·에코 테마의 관광지	숙박업소, 관광지 등 총 2개 분야 * 숙박업소는 13개로 세분류
인증 현황	총 2,525개소	정보 미제공	약18,000개소

구분	중국	캄보디아	영국
인증 혜택	관광지 품질등급 증서 및 표시판 증정	정부승인 인증서,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 등	인증마크 사용, 인증데칼, 평가보고서 제공, 컨설팅, 홍보지원
인증 유효	별도없음	2년	-

(자료:한국관광공사)

(2) 시사점²⁴⁾

위에서 개관된 7개국의 경우를 구분체계별로 주요내용에 관한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하여 본다면,

1) 인증마크 단일화를 통한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비교대상 7개국의 경우, 관광품질 인증대상에 대한 통일적 인증마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마크는 각 국별로 관광품질 심사에 대한 일정 절차를 통과하여 우수 관광산업의 한 유형으로 공적 인정을 득함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인증의 단일화는 관광수요자의 입장에 있어 마치 등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일정 관광품질 대상 범주에 있어 이러한 단일화 된 인증마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

비교대상 국가 7개국 가운데 프랑스(프랑스산업경제부 기업총국-“관광품질인증제도 운영위원회), 중국(국가여유국), 캄보디아(관광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중앙행정청

24) 본 내용은 본 보고서 33면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40면~41면)에 소개한 “주요 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힘.

산하 전담기관(공사)을 통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관광분야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은 아닐 것이다. 즉 현대 행정체계에 있어 요구 시 되는 다양한 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성 제고의 일환으로서 해당 행정영역의 주요 방침과 관리·감독의 중요 사항을 제외한 실무상의 전문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고유한 특성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위임내지 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 것이다.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앙행정청이 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운영기관에 이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도입시기 및 도입사유

생각건대 비교 7개국이 빠르게는 뉴질랜드는 1993년,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는 캄보디아의 경우로서 2010년에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도입시기는 각 국가별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인식이 강하게 발현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일정 관광분야에 있어 이러한 인증제도 도입과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된 바 있다.

도입사유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국가가 공히 “신뢰성” 회복 또는 강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의 현황에 비추어 시사점을 주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생각건대 여기에서의 신뢰성이란 비단 관광산업에 있어 최종적 대상으로서의 관광사업자와 관광객 간의 신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각 해당국의 행정주체와 관광사업자 간의 신뢰관계도 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품질에 대한 인증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이러한 도입배경은 비교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통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신뢰관계의 구축은 곧 관광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4) 인증대상 내지 범주

비교 국가별로 상이하게 조사되었다. 홍콩의 경우 소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총 3개 분야, 뉴질랜드의 경우 숙박업소, 행사장, 교통, 여행사, 관광안내소 등 총 7개 분야, 스페

인의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여행사, 해변, 관광안내소 등 총 22개 분야, 프랑스의 경우 숙박업소, 관광지, 음식점, 관광안내소 등 총 7개 분야, 영국의 경우 숙박업소, 관광지 등 총 2개 분야, 중국의 경우 중국 내 정식개장 1년 이상의 관광지, 캄보디아의 경우 문화-역사-농업-에코 테마 관광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 범위는 국가 별 관광환경에 따라 우선적인 적용이 요구 시 되는 범주를 중심으로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범위의 폭만으로 고려할 경우 스페인이 22개 분야로 가장 많은 범위에 대한 인증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 사항으로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관광 행위의 특성 상 귀결되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특이할 사항은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의 경우 숙박업소에 대한 세 분류를 6 ~ 13개로 설정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향후 그 분류내용과 체계에 있어 검토 대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유효기간

인증유효기간은 국가 별로 상이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대개 1년에서 3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증기간은 인증 받은 사업자에게는 인증을 득함으로써 인한 지원에 따른 혜택 기간을 의미하게 되며, 인증기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공적 관리-감독의 의무가 부여되는 기간이다. 아울러 그 기간의 장단은 변화하는 국가별 관광환경에 대한 적응 탄력성과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하여진 것이라 생각된다.

6) 종합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화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7개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인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국가 중앙행정청 차원의 통합적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인증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제4장

●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제1절 제도화 필요성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체계

제4장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제1절 제도화 필요성

이미 앞에서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는 무엇보다 통합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근거하여 다양한 문제의 발생과 이에 따른 관광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분설하여 본다면,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성,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²⁵⁾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관광산업 관계자 등은 종래와 같은 인증제도가 가지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관광분야에 있어 통합 품질인증제(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라 한다.)의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8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시행을 밝힌 바 있다.²⁶⁾

이와 같은 최근 경향을 띠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필요성에 관하여 기존 관광분야 인증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의 통합 품질인증제 제도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세히 언급되어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25)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7면.

26)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통합-개선, 2017. 8. 8

[관광분야 기존 인증제도와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비교²⁷⁾]

구 분	기존 관광 분야 인증제도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관리시스템 존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관광품질 관리시스템 부재 -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에 대한 총괄관리시스템 부재로 인증기관별 기준과 표준의 상호 중복성 발생 - 부처 및 지자체별로 통합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시대적 환경변화의 필요에 따라 유사한 제도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관리시스템 도입 - 관광부문 국가 단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광품질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한국관광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국가 관광품질 및 관광경쟁력 제고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영 법적 근거 미흡 - 인증제도 운영기관의 인증제도 운영 근거 미흡 - 음식점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운영이 다수이나, 단체별로 시행하는 숙박, 우수관광인증은 운영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개정안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지속성 강화 -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제도 보완
유사인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인증제도 난립 -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으로 관광객들에게 관광품질 인증제도 혼란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인증제도를 통한 통합인증 -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통해 유사 인증제도 통합 노력
중복인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인증 불가피 - 인증을 위한 표준·서비스 기준 제정시 관련 기관간 협의 부족으로 중복 인증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인증 개선 - 단일 인증제도 확산을 통해 중복인증 불가피성 개선

27)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0면.

구 분	기존 관광 분야 인증제도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운영 우수숙박시설은 관광공사의 굿스테이와 중복되는 인증으로 단일화 필요 - 음식점은 주무부처, 지자체 및 방 송사 등의 인증 및 유사 인증제에 중복 인증 	
인증심사의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인증 심사전문성결여 - 관광품질 인증심사를 위한 전문화된 평가모형, 평가기준, 심사매뉴얼, 심사평가표, 심사원 교육 훈련 등이 없이 진행되어,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보장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인증 심사전문성 제고 - 관광인증 전문 평가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자율적 서비스품질 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미비 - 서비스매뉴얼, 서비스교육 등 인증업소의 자발적인 서비스품질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부족 - 인증 사전·사후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모니터링 등 인증업소 서비스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서비스품질관리 체계 구축 - 인증업소에 대한 지원 체계를 완비하여 인증업소 서비스품질 자율관리 지원(서비스매뉴얼, 교육 등)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인증제 운영에 따른 낮은 브랜드 인지도 - 다수 인증제도 난립 운영에 따라, 관광품질을 보증하는 인증 브랜드로서의 홍보마케팅 효과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브랜드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홍보를 통한 인증업소 신뢰도 및 인지도 제고 - 지역별 인증업소 기반 국내외 관광 마케팅 집중 추진
사후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사후관리 - 불량업소 운영 만연 등으로 관광만족도 저해, 관광서비스 품질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체계 완비 - 인증을 통한 4단계 서비스품질 관리 프로세스 강화로 사후관리 강화 - 자율점검 -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구 분	기존 관광 분야 인증제도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 인증업소에 의한 휴가철 바가지 요금, 대실 영업, 시설·서비스 낙후 등 규정 위반 사례 자주 발생	- 서비스모니터링

현대 행정은 법규범을 통하여 그 구체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인정받는다. 위의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물론 앞에서 개관한 주요 국가의 경우를 통하여 현행 관광분야 인증제도에 대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법제도적 도입과 확대 적용은 인정되어지는 것이다.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체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하여 시범사업의 성격으로서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시행과 추진내용을 밝힌 바 있음은 본 제도의 법제도화를 위한 주무부처의 노력의 일환이라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제도화의 주요내용을 개관한다. 이는 이후 법제화를 위한 제도적 구상 틀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1) 개요

“2017년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그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²⁸⁾

2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통합-개선, 2017. 8. 8., 1면.

(2) 추진방향²⁹⁾

기존 인증제(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개선을 위해 신규 품질 인증 평가기준 개발·적용, 전문평가단, 운영시스템 도입

(3) 주요내용³⁰⁾**1) 인증대상**

숙박 3종, 쇼핑 1종 등 총 4개 분야 (「관광진흥법」 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 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2)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로 한다.**3)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 (평가항목·분야별 특성 고려) 인적·물적 기반구조, 서비스제공 프로세스, 품질 시스템 등 운영 프로세스

- (평가배점) 현장평가(400) + 불시/암행평가(200점)

- (평가방식) 공개 선발 및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 평가단 구성(인증심사, 관광분야 5년 이상 유경력자), 2인 1조 평가

- (신청방법) 온라인(qual.visitkorea.or.kr), 이메일 및 우편

4) 인증방법

3년 단위 / 단일제 및 등급제 ※ 숙박부문 등급제(스탠더드, 프리미어)

29)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통합-개선, 2017. 8. 8., 3면.

30)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

- 5) 인증혜택**
- 홍보마케팅 (내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서비스역량 강화지원(서비스교육, 운영매뉴얼, 서비스모니터링, 벤치마킹 워크숍, 컨설팅 리포트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혜택 조건 부여 등
- 6) 품질관리 강화**
- 글로벌 수준의 관광품질 표준과 통합평가모델의 도입
 - 관광인증 전문 평가단 운영을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 4단계 서비스품질 관리프로세스(자율점검-현장평가-불시·암행평가-서비스모니터링)

7) 세부평가항목³¹⁾

① 인증결정기준

	숙박업 (일반, 생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일반		헤리티지		G형		H형			
	1차심사	2차심사	1차심사	2차심사	1차심사	2차심사	1차심사	2차심사	1차심사	1차심사	2차심사	
	400	200	400	200	400	200	400	200	400	400	200	
	총 배점 600		총 배점 600		총 배점 600		총 배점 600		총 배점 400		총 배점 600	
프리미어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90% 이상 획득 시				(국가·지방 문화재 또는 70년 이상 고택)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8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스탠더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80% 이상 획득 시		필수 항목 만족 + 총점의 70% 이상 획득 시	

데이, 우수쇼퓨점 통합-개선, 2017. 8. 8., 3면.

31)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http://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qual/criteria.kto> (최

② 업종별/분야별 평가 항목수

구분	평가기준	숙박						쇼핑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평가기준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일반	생활	일반	헤리티지	G형	H형		중대형	소형
기본 구조	인적자원	4	4	4	4	3	3	종사원 자질	3	3
	건물 및 시설	2	2	3	3	4	5	종사원 외국어 능력	1	1
	소방 안전	3	3	3	3	3	2	상품판매 공정성	2	2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서비스	4	4	3	3	3	3	건물 및 시설	9	7
	주차 서비스	3	3	1	1	0	0	소방·안전	1	1
	입실서비스	7	7	2	2	2	1	정보제공서비스	2	1
	숙박서비스	22	22	13	11	16	15	상품관리 및 판매서비스	8	7
	취사시설서비스	0	3	0	0	0	0	고객관리	2	2
	부대서비스	3	2	3	3	4	2	배송서비스	1	0
지원 프로세스	서비스품질시스템	1	1	1	1	1	1	필수항목	2	2
	서비스 모니터링	1	1	1	1	1	1	가정항목	3	3
부가	가점 및 감점	6	6	4	3	4	5	항목수	34	29
합계	항목수	56	58	38	35	41	38			

③ 필수항목

구분	숙박						쇼핑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일반	생활	일반	헤리티지	G형	H형	중대형	소형
특성항목	건전성 관리 (성인방송 제어 시스템, 차등요금제 미 공지 등)		한옥전통미, 전통체험 프로그램운영 등		한국가정문화체험 실제거주 여부		가품 또는 위조품 판매여부	
건물 및 시설	위반건축물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정찰제 시행여부	
소방·안전	소방·안전법규 비상대피통로 등		소방·안전법규		객실화재 감지기, 비상대피통로	객실화재 감지기, 소화기	-	
인적자원	-		-		-		-	
주차	차단막 제거		-		-		-	
취사시설	-	취사시설 제공 및 청결	-		-		-	
입실	개방형 프론트 요금표 게시 신용카드 결제		-		조리기구 청결	-	-	
숙박	청결(객실, 침구, 욕실)		청결(객실, 침구, 욕실)	객실 다양성 및 독립건물 청결 (객실, 침구, 욕실)	청결(객실, 침구, 욕실)		-	
부대	-		-		-	조식제공	-	

④ 불시 및 암행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숙박					쇼핑			
구분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G형)	구분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일반	생활	일반	헤리티지			중대형	소형
인적자원	복장용모		복장용모		복장용모	종사원 자질	종사원 친절성, 복장용모, 상품설명	
건물 및 시설	-		-		-	종사원 외국어 능력	외국어 소통능력	
소방·안전	안전장비관리		안전장비관리		안전장비관리	상품판매 공정성	허위정보 호객행위여부 고객불만대응	
정보제공 서비스	외국인대상 숙박서비스 정보 제공		-		외국인서비스 제공체제	건물 및 시설	주차시설 개장·폐장 시간표시 매장내부 청결	통영물면 계사판 개장·폐장 시간표시 매장내부 청결
주차 서비스	주차장 차단막 제거		-		-		소방· 안전	-
입실 서비스	고객등록카드 개방형 프론트 요금표 게시 차등요금제 미공시		고객등록카드		고객등록카드	정보제공 서비스	정실제, 환물 정보	
숙박 서비스	청결(객실, 욕실, 침구, 복도 등), 객실편의용품, 침구류 품질, 린넨류 보관, 욕실시설 품질, 욕실환기, 배수, 욕실편의용품, 상인방송 제어기능		청결(객실, 욕실, 침구, 복도 등), 침구류 품질, 린넨류 보관, 욕실시설 품질, 욕실환기, 배수, 객실·욕실 편의용품	청결 (객실, 욕실, 침구), 침구류 품질, 린넨류 보관, 욕실시설 품질, 객실편의용품	청결(객실, 침구, 욕실), 침구류 품질, 린넨류 보관, 욕실시설 품질, 욕실환기, 배수, 욕실편의용품	상품관리 및 판매 서비스	상품품질관리 (유통기한 등) 사후면세제도 안내	
취사시설 서비스	-	취사시설의 품질 취사시설의 청결	-		조리기구 청결	고객 관리	교환, 환물 신속성	
부대서비스	조식제공		조식제공 전통체험 프로그램		-	필수 기준	가분, 위조품 판매여부, 정실제 시행여부	
서비스 모니터링	고객모니터링		고객모니터링		고객모니터링			

제5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제1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향성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제3절 지원

제4절 동등성 인정 인증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제6절 시범사업

제7절 수수료

제8절 권한의 위임- 위탁

제9절 과태료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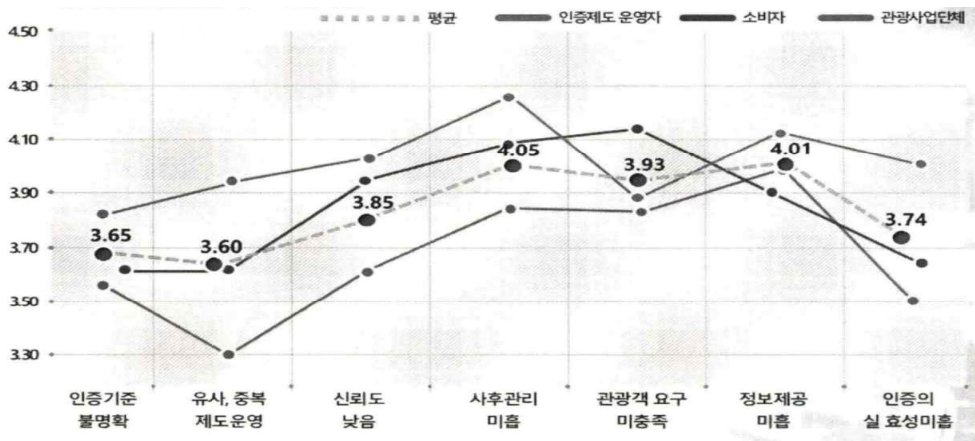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제1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향성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제화는 곧 제도의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법제화 취지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은 기존 관광분야 인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그동안 주무부처가 꾸준히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제도 운영적 관점에 대한 고려이다.

【기존 관광품질인증제도의 문제점³²⁾】



32) 국회의원 염동열/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자료집, 2016.9.5., 4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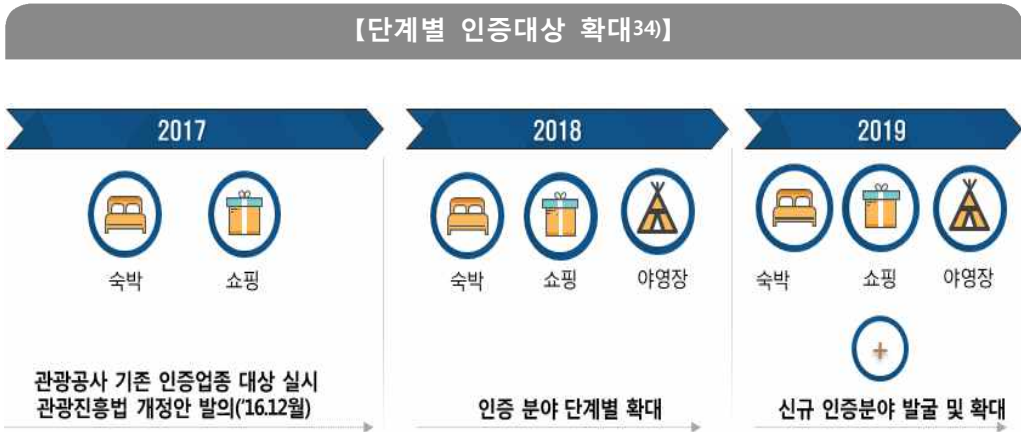
이는 위 제4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도설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법률가운데 그 대상법률의 선정과 규정내용에 대한 제-개정을 입법기술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대상법률을 제도운영취지에 따라 「관광진흥법」으로 설정하며, 동법 상 관련 주요내용에 대한 규범화 논의 전개에 있어 최근 국회에 제출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³³⁾ (이하 ‘일부개정 법률안’ 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한국관광 품질인증 취소, 시범사업, 수수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규정방안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제도의 도입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정이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무부처는 시범 사업적 성격으로써 「관광진흥법」 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추진 계획에 따라 향후 그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824, 2016.12.30



이와 관련하여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법적 근거로서 아래와 같은 안을 제안하고 있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3. 그 밖에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3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통합-개선, 2017. 8. 8., 4면.

-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이하 “동등성 인정 인증”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일부개정 법률안에 있어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범위에 관한 소관위원회 검토의견은 크게,

- ① 제정안 제1항 제2호, 제3호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규정되고 있는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점,³⁵⁾
- ② 품질인증의 대상으로서, 관광사업 중 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및 카지노업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 대하여, 비록 법적·실무적 제외사유가 인정된다 할 지라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가 관광접점별 개별 서비스의 품질인증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려는 제도인 만큼 장기적으로

35)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2면~13면 참조.

관광과 관련된 모든 업종을 도입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동 인증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³⁶⁾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³⁷⁾

③ 비록 제정안에서 “기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한 우수숙박시설 지정 제를 동 인증제로 대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³⁸⁾” 이해된다 할지라도 “제2호와 제3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나열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만큼 제3호에 흡수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간결하고 입법경제적으로 보이며, 향후 법률에 직접 인증제의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는 입법수요의 여지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³⁹⁾” 우려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수정의견으로써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⁴⁰⁾ ① -----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 .
 1. 삭제
 2. 삭제
 3. 삭제

생각건대,

①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는 ‘관광사업’을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을 위한 운송업, 관광객

36)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4면.
 37)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3면~14면 참조.
 38)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4면.
 39)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4면~15면.
 40)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5면.

을 위한 숙박업, 관광객을 위한 음식업, 관광객을 위한 운동업, 관광객을 위한 오락업, 관광객을 위한 휴양업,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은 모두 관광사업에 해당되고, 또 「관광진흥법」의 어떤 조항에서든지 관광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조항에서 관광사업은 이러한 업종을 모두 포함한 사업을 의미하게 된다.⁴¹⁾ 이러한 관광사업에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7종이었고, 「관광진흥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세분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관광사업의 종류는 총 37종에 이른다.⁴²⁾

이와 같은 현행 「관광진흥법」의 입법형식은 ‘관광사업’의 범주와 세부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때문에 일부개정안에서와 같은 동법 상 관광사업의 범주 내에 별개의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포섭하고자 함은 문제시 된다.

②, ③의 경우, 먼저 소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따른, “---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에 대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품질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관계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담당실무자는 물론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관계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실무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에서 제외 시 함이 인정되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고려할 우려가 있고, 실상 법률에서 제정됨이 바람직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될 내용은 입법원칙으로서의 소위 “명확성의 원칙”이다. 입법의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은 법규범의 예측가능성의 실현의 법리로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³⁾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포섭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내용을 명확히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의적으로 해석·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말한다.⁴⁴⁾

41) 방극봉, 신 관광법규의 이해, 초이스디자인, 2016., 66면.

42) 방극봉, 신 관광법규의 이해, 초이스디자인, 2016., 67면.

43)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473면.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 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입법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그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⁶⁾

이러한 관점에서 상위 법률에서 가급적이면 해당 제도 운영에 있어 그 대상 범주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관계인의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제고와 가급적 추상적 용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생각할 때, 본 일부개정안 내용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덧붙여,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 삭제
3. 그 밖에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한 내용을 각 호가 아닌 별개의 항목을 통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법기술상 명확성 원칙 견지라는 관점에서 일부개정안 제48조의10제7항에 따른 내용에 대한 견해는 매우 합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4)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448면.

45) 현재 1995. 7. 21. 자 94헌마125 결정. ; (재인용)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100면.

46) 현재 2014. 4. 24. 자 2013헌바110 결정. ; (재인용)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101면.

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 ⑥ 생략

⑦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아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기존 관광 분야의 인증 제도처럼 도입 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바, 한국관광 품질인증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도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⁴⁷⁾을 지적한 내용은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관련하여 입법 체계적 측면에 있어 주무부처가 상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관광진흥법」제19조의2(우수숙박시설의 지정) 조항은 본 통합 품질인증제의 도입에 따라 신설조항의 대상으로 포섭이 정책적 방향인 바, 삭제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제3절 지원

일부개정 법률안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득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제48조의10제4항 각 호를 통하여 그 지원 내용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지원내용에서 고려할 점은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필요성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하

47)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9면.

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⁴⁸⁾ 이와 같은 보조금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동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득한 민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 체계에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⁴⁹⁾

제4절 동등성 인정 인증

일부개정 법률안 제48조의10제5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이하 “동등성 인정 인증”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여 소위 ‘동등성 인정 인증’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설정에 관하여 소관위원회 검토의견에서는 제도의 개념과 현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검토의 필요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등성 인정 인증 제도’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인증의 효력을 서로 인정해 주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일례로 ‘유기농 동등성’이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유기농으로 인증받은 유기농식품은 동등성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른 동등성 인정 인증 제도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도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증제의 인정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도입 취지가 기존 인증제도의 난립과 신뢰도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등성 인정 인증제를 통해 기존 인증

48)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9면.

49)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대여(융자)제도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제공이 쉽지 않은 영세사업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보조금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김진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7면.

제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⁵⁰⁾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증취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8조의11(한국관광 통합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⁵¹⁾

이러한 개념에 상응하여 일반적 행정법률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규정화하고 있다. 때문에 인증이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근거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있어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취소권자는 인증을 부여한 권한이 있는 자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형식은 일반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8 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

50)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7면~18면.

51) 한국법제연구원 편, 2016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1991면.

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표시를 정지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전업·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아가 입법 상 취소규정과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청문에 관한 내용이다. 종래 청문조항은 주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각종 “취소” 등)의 근거조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왔는데, 2014년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인허다 등의 취소, 신부-자격의 박탈,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 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으며 청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었다(동법 제22조의제1항제3호)⁵²⁾

생각건대 취소는 경우에 따라 해당 수범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권익에 커다란 침익적 행위로 작용하게 될 소지가 매우 큰 행정작용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 구제 절차로서 청문이 갖는 의미는 지대하다 할 것이다. 때문에 위에서와 같이 행정절차에 대한 일반 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 상 관련 규정의 적용은 해당 수범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해당 관련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제77조(청문)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바 입법형식에 맞추어 규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규정안 예시】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2.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 2의2. 제48조의7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 2의3.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3. 제56조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52) 국회법제실, 2015(개정증보판)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15., 587면~588면.

첨언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품질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입법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예의 시험의뢰
-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접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시범사업

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의 실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제48조의12(시범사업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효율적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시범사업이란 사업이나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 전에 사업의 효용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이나 특정한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⁵³⁾

현행 행정법령상 이러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약 53개 개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주요 대상은 주로 건설, 교통, 기술, 보험, 보건 등에 대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으로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등) 규정이 유일 할 것이다.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의 검토의견에서는, “신규제도나 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과 함께 시범사업의 규정을 함께 두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입법례로 볼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경우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이 꼭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⁵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3)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22면.

54)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23면. 아울러 검토의견에서는 입법취지에 상응하여 시범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는 사유를 같은 면에서 크게, “① 신규제도·사업 특성상 개인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② 신규제도·사업의 대상자(수혜자)가 너무 많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유예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같은 검토보고 23면에서 26면에 걸쳐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③ 신규사업·제도를 보급·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범사업의 대상자나 대상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경우

제7절 수수료

수수료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가운데 행정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수수료이며, 시설의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가 사용료이다. 광의의 수수료 개념에는 사용료가 포함된다.⁵⁵⁾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 제79조(수수료)규정에서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현행	일부개정안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 15. (생략) <u><신설></u>	제79조(수수료) ----- ----- ----. 1. ~ 15. (현행과 같음) <u>16.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u>

이는 행정서비스 수혜자의 신분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수수료와 조세의 구분된다. 즉 조세가 담세능력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데에 반하여 수수료는 이익을 얻는 특정인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⁵⁶⁾

55)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재정기획관실, 2006., 423면.

56)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재정기획관실, 2006., 423면.- 아울러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수수료징수 근거와 관련하여 크게, 서비스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경우로서 4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있다.(같은 책, 423면~425면.) 생각건대 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위 4가지 유형 가운데, 서비스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에도 그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책,

제8절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는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단체 등에 맡기고, 이를 받은 수임자·수탁자가 그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⁵⁷⁾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규정취지를 이어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견지하고자 한다. 위탁이란, 특히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특히 민간위탁이라 한다.⁵⁸⁾

현행	일부개정안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2. (생략) 2의2.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숙박시설의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24면.)
 57) 강문수 외 4인, 관광숙박업법령(가칭)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264면.
 58) 한국법제연구원 편, 2016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1481면.

현행	일부개정안
<p><u>지정 및 그 취소</u></p> <p>3. ~ 7. (생략)</p> <p><신설></p> <p>④ (생략)</p>	<p>3. ~ 7. (현행과 같음)</p> <p>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p> <p>④ (현행과 같음)</p>

이는 행정관청이 자신의 법령상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보통은 하급관청)에게 이양하고 그것을 이양 받은 관청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권한위임과는⁵⁹⁾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원 행정청이 위임내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지는 것이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한국관광공사를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신설에 있어 현행 「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의 개정사항 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숙박시설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은 앞의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논한 바와 같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설정에 있어 주의할 점은 구체적 권한의 위탁에 관한 하위법령에서의 연동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제9절 과태료

과태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행정법규에 대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

59) 한국법제연구원 편, 2016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362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보고·자료제출 등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단순한 의무태만에 해당한다.⁶⁰⁾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는 과태료는 이미 경미한 행정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써 입법형식상 일반화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태료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주된 논의점은 입법형식상에 있어서는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있어 【별표】를 통하여 규정되는 부과기준의 규율내용에 대한 밀도의 문제이다. 아울러 꾸준히 전개되는 사안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의 적정성 논의이다.

전자의 경우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별표 5】의 경우, 일반기준에서 차수산정기준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의무위반 횟수 산정을 위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감경기준을 여타 다른 법령의 경우에 비하여,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여 설정하고 있는 점은 감경기준 설정 취지에 상응하는 매우 긍정적인 규정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기준에 있어 차수기준 상 제1차, 제2차, 제3차로 연결되는 반복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 비율이 경우에 따라 1: 1: 1의 비율을 취하는 것은 차수기준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때문에 향후 이러한 비율설정은 의무위반의 경중이라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산정비율체계를 달리하여 규정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60) 박윤혼·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558면.

과태료 부과사유로서의 의무위반행위와 부과금액 간 적정성의 논의를 위한 대상으로서 현행 「관광진흥법」 제86조(과태료)제2항제5호에서는,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과 달리 일부개정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현행 입법례를 참조하여 동일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설정하고 있다.

현행	일부개정안
<p>제86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p> <p>③ (현행과 같음)</p>

이러한 입법안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비록 인증제도에 대한 경미한 의무 위반으로서 동일한 부과금액을 설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과 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관한 서비스 품질 인증을 과연 동일 선상에 놓고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향후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문수,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 강문수의 4인, 관광숙박업법령(가칭) 제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김 봉, 제주관광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과제 탐색, 국제자유도시연구 제2권제1호, 2011.
-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 김소영, 문화상품 품질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박영도, 입법학 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 방극봉, 신 관광법규의 이해, 초이스디자인, 2016.
- 박윤흔·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 이상경,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서울법학 제22권제3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조재현, 의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23(2), 한국의료법학회, 2015.
- 최환용, 기준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최혜자,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한국법제연구원 편, 2016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원, 2016.

국회법제실, 2015(개정정보판) 법제실무, 국회법제실, 2015.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법제처 재정기획관실, 2006.

국회의원 염동열/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 자료집, 2016.9.5.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통합 로드맵 수립」, 2017.3.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 <https://standard.go.kr/KSCI/crtfcPotIntro/crtfcSystemIntro.do?menuId=540& topMenuId=536&upperMenuId=539> (최종확인일 : 2017.11.22.)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 <http://kto.visitkorea.or.kr/kor/biz/marketing/qual/criteria.kto> (최종확인일 : 2017.11.22.)

김건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1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824, 2016.12.30.

헌재 1995.7.21. 자94헌마125 결정

헌재 2014.4.24. 자2013헌바110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통합 - 개선, 2017.8.8.

현안분석 2017-12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한 통합 품질인증제
도입방안 연구

2017년 11월 15일 인쇄
2017년 11월 15일 발행

발행인 | 이익현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825-6 93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값 7,000원